

監査制度에 관한 小考*

權 鍾 浩

(建國大學校 法科大學教授・法學博士)

< 目 次 >

- | | |
|----------------------|--------------------|
| I. 서설 | 4. 독일 |
| II. 우리나라 감사제도의 문제점 | 5. 일본 |
| 1. 감사의 독립성 결여 | IV. 각국의 감사제도의 동이 |
| 2. 감사의 자격 | 1. 영미법과 독일법의 비교 |
| 3. 내부감사와 외부감사간의 업무연계 | 2. 우리나라법과 일본법의 비교 |
| 4. 사내감사 | V. 결어 |
| 5. 소괄 | 1. 영미식의 일원적 시스템이나, |
| III. 각국의 감사제도 | 독일식의 이원적 시스템이나 |
| 1. 개관 | 2. 감사회제도 |
| 2. 미국 | 3. 감사의 독립성 확보 |
| 3. 영국 | 4. 사외감사 |

I. 서 설

우리나라의 경우 감사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며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를 주된 임무로 한다. 그리고 상법은 이러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무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상법상 감사의 권한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에는 먼저 (i) 직무수행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① 회사에 대한 보고요구·조사권(상법 412조 2항), ② 자회사에 대한 보고요구·조사권(상법 412조의 4 제1항), ③ 이사회출석권·의견진술권(상법 391조의 2 제1항), ④

* 이 논문은 1998학년도 건국대학교 신입교원 연구비지원에 의한 논문임.

이사로부터 보고를 받을 권한(상법 412조의 2)이 있고, (ii)회사손실의 사전방지를 위한 것으로 ⑤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상법 402조), 그리고 (iii)주주총회 및 주주를 대신 또는 보좌하는 기관으로서의 감사라는 측면에서 인정되는 권한으로서는 ⑥주주총회소집청구권(상법 412조의 3 제1항), ⑦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회사대표권(상법 394조 1문), ⑧각종의 소권(상법 328조, 376조 1항, 429조, 445조, 529조 1항 등)이 있다. 그 외에도 감사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⑨해임에 관한 주주총회에서의 진술권(상법 409조의 2)이 마련되어 있다.

감사가 이와 같이 다양한 권한을 갖게 된 것은 1963년에 제정된 신상법에서 이사회제도가 도입된 것과 관련하여 종래 의용상법(구상법) 하에서 감사가 가지고 있던 회계감사권과 업무감사권 중 후자는 이사회에 위양하고 감사는 단지 회계감사권만 갖는 것으로 한 후, 이사회에 의한 업무감사는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감사기능의 형해화 현상만이 심화되자 1984년 상법개정에서 감사의 권한을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로 환원하는 등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1995년 개정에서도 감사의 충실화를 위한 여러 조치가 취해진 결과이다.

한편 1980년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980. 12. 31 법률 제3297호)(이하 “외감법”이라 함)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률은 기업규모면에서 경제적·사회적 영향력이 큰 기업, 즉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계감사에 관해서는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의무화한 것이다(외감법 2조, 동법시행령 2조 1항).

우리나라 감사제도는 이와 같이 회사의 규모를 기준으로 법규제의 차별화가 이루어지면서 상법에 의해 주식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내부에서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를 동시에 담당하는 감사(내부감사)와 외감법에 의하여 회사외부에서 회계감사만을 담당하는 외부감사인(외부감사)이 양립적으로 존재하는 이원적 체제로 되었고 특히 외감법 적용회사의 경우에는 회계감사에 관하여 내부감사에 의한 감사와 함께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가 중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증권거래법도 주로 주권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감사의 충실화를 위한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¹⁾.

우리나라 감사제도는 이처럼 상법개정시 마다 감사의 권한을 확대·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왔으며 그 외 외감법이나 증권거래법의 개정을 통해서도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취해졌지만 여전히 감사제도의 형해·무기능화가 문제되고 있다. 6. 25 이래의 최대의 국난이라고 하는 IMF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감사제도의 형해·무기능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감사제도의 무기능화와 관련하여 현행 우리나라 감사제도에 있어서 문제점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1) 李範燦, “企業의 構造調整과 株式會社機關의 改編方向” 「會社法の 諸問題」 (李範燦 編著, 1998) 222쪽 이하 참조.

제외국의 감사제도와 비교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II. 우리나라 감사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 감사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고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적어도 '회계감사'에 관해서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에 의해 중첩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지는 등 감사의 실효성 확보라는 면에서 법제도상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감사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시되고 있다.

1. 감사의 독립성 결여

그 이유는 첫째 감사의 독립성 결여이다.

현행 우리나라 監査關聯法(상법, 외감법, 증권거래법)은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감사의 안정적인 지위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감사의 임기"에 관해서는 종래 1년이던 감사의 임기를 1984년 상법개정에서는 2년으로 그리고 1995년 개정에서는 이사와 같이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상법 410조), 또 "감사의 보수"에 관해서도 비록 주권상장법인에 국한하지만 1997년 개정증권거래법은 이사의 보수와 일괄하여 의결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안전으로 의결하도록 하였고(동법 191조 2항), 그리고 감사의 선임결의에 있어서 대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3%로 제한하고 있다(상법 409조 2항)²⁾.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독립성이 문제되고 있는데 바로 감사의 선임절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상법에 의하면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나(상법 409조 1항) 주주총회가 형해·무기능화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결국 이사회가 제안한 후보자가 감사로 선임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를 하는 자를 선임하는 현상이 계속되는 한 내실있는 감사를 기대한다는 것은 애시당초 무리한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외부감사인인 경우는 감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제청에 의하여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되지만(외감법 4조 2항 본문, 동법시행령 3조의 2)³⁾ 이때에도 감사가 외부감사인을 제청하는 경우에는 제청하는 감사가 사실상 이사회에 의해 선

2) 또한 1997년 개정증권거래법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대주주의 이러한 의결권제한은 감사의 해임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하는 한편, 3%의 산정시에는 대주주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까지도 합계하도록 하였다 (동법 191조의 11 제1항, 동법시행령 84조의 18). 다만 이러한 제한은 주권상장법인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감사의 해임시 대주주의 영향력이 문제될 수 있다.

3) 그러나 주권상장법인과 리전사업연도에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선물거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계열회사는 반드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제청에 의하여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외감법 4조 2항 단서).

임되는 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확보는 여전히 문제된다.

2. 감사의 자격

둘째는 감사의 자격에 관한 문제이다.

監事の 독립성 확보나 監査의 실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면 감사의 자격은 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법은 감사의 자격에 관해서는 감사의 공정성만 염두에 둘 뿐 특별한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다. 즉 감사는 피감사회사 및 그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는 감사의 겸직금지규정(상법 411조)과 관련하여 자격이 제한될 뿐이다.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대상으로 한 적법성·타당성 감사와 함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대상으로 회계의 적정성도 감사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상법을 포함한 관계 법령과 회사의 정관 및 제 규정은 물론이고 회계관련지식도 충분히 습득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으나⁴⁾ 이와 관련하여 현행상법은 감사자격에 관해 어떠한 제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종래 우리나라 감사제도에 있어서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던 “감사를 비상근으로 선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1997년 개정증권거래법은 주권상장법인 중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 1인 이상의 상근감사를 두도록 의무화하면서 동시에 상근감사의 자격에 관해서도 비교적 엄격한 제한을 두었다⁵⁾. 그러나 이러한 증권거래법상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자산총액이 1천억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상근감사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권비상장법인이나 주권상장법인이어도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감사자격이 여전히 문제된다.

3. 내부감사와 외부감사간의 업무연계

셋째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회계감사인)와의 업무연계 및 협력에 관련된 문제이다.

4) 金敎昌, “현행 商法上の 監査制度와 그 改善方向” 「上場協」 제26호(한국상장협의회, 1992년 秋季號) 12쪽.

5) 증권거래법상의 상근감사의 자격요건 (적극적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주권상장법인의 임원으로 3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국가·지방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금융관계기관에서 통산하여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당해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④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사범대학 등에서 경영학·회계학·경제학·법학 등을 3년 이상 강의한 조교수 이상의 교원, ⑤위의 ① 내지 ④ 외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자격 또는 근무경력을 인정한 자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2 제2항, 동 시행령 제84조의 19 제2항). 상세는 洪復基, “改正證券去來法에 있어서 監事の 資格” 「企業과 法」 (度岩 金敎昌辯護士華甲記念論文集, 1997) 373쪽 참조.

상법상 감사(내부감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주식 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그리고 외감법상의 외부감사인(외부감사)은 회계감사만을 그 임무로 한다. 따라서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경우 회계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에 의해 중복하여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양 감사간의 '업무조정'이나 '업무연계'의 필요성이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다.

먼저 (i) "업무조정"과 관련하여서는 양 감사의 업무를 구분하여 내부감사에는 업무감사만 외부감사에게는 회계감사만 전담하게 하는 방법이, 그리고 (ii) "업무연계"와 관련해서는 감사 상호간의 통지·보고의무의 법정 혹은 독일의 감사회제도를 도입하여 감사회에 외부감사인 이 감사결과를 보고하는 방식 등이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i)의 방법은 같은 회계감사라 하더라도 내부감사와 외부감사가 하는 역할을 엄격히 구별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고 바로 그점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내부감사는 어디까지나 회사의 내부기관이므로 내부감사가 하는 회계감사는 기본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옹호하고 나아가 회사 외의 이익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기껏 회사채권자의 이익에 대한 배려정도에 그칠 수 밖에 없다. 바로 이 점에서 내부감사의 감사의 초점은 이사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가 합법적으로 작성되어 배당가능이익의 산정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두지 않을 수 없게 된다⁶⁾.

그러나 외부감사의 경우에는 그 임무를 이처럼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본래 외부감사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기업규모의 확대와 함께 복잡하고 고도화된 기업회계에 관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회계전문가를 통하여 심사를 함으로써 주주나 일반투자자에게는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그리고 회사내부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하거나 경영을 책임지는 감사나 경영진에게는 그 직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회계관련 정보나 조언을 제공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다. 따라서 외부감사의 감사는 회사의 이익만이 아니라 공익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외부감사는 내부감사와는 구별되어야 하고 또 감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의 제공대상도 회사내부의 이해관계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즉 외부감사는 이사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적절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그리고 그것이 공개되었을 때 회사 내외의 이해관계자(주주, 회사채권자, 일반투자자를 포함)에 있어서 신뢰할 만한 것이며 또한 공개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가에 감사의 초점을 두지 않을 수 없다⁷⁾.

그리고 (ii)의 "내부감사와 외부감사간의 업무연계"와 관련해서는 1996년 개정외감법은 감사와 외부감사인 쌍방에 대해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서로 통보할 의무를 가하고(동법 10조 1항, 3항), 외부감사인에 대해서는 추가로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

6) 同旨, 崔柄星, "商法上 監事와 外部監査人の 責任限界와 效率的 連繫方案" 「上場協」 제26호(한국상장협의회, 1992년 秋季號) 33쪽.

7) 同旨, 崔柄星, 上掲 논문 33쪽.

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동조 2항). 뿐만 아니라 1997년 개정증권거래법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 이사에 대한 내부감사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을 외부감사인 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시한과 같이 총회일 1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도록 함으로써(동법 191조의 11 제3항) 감사와 외부감사인간의 업무연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내부감사와 외부감사간의 연계·협력문제는 법제도상 어느 정도는 정비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개정은 현행 상법체계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의 연계·협력문제를 “독일식의 감사회제도 도입을 통한 발본적인 해결”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보면⁸⁾ 미흡한 것은 사실일 것이다.

4. 사내 감사

넷째 감사는 주로 사내출신자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영자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가 부실·무기능화하고 있는 이유로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감독·감사기관의 구성원에 있어서 구조적인 한계이다.

현행 상법상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해서는 이사회와 감사라는 두개의 독립된 기관이 대등·병립적 관계에서 각각 감독권과 감사권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자에 대한 감시기능이 늘상 문제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어나 감사가 대부분 사내출신자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게다가 감사직에 대해서는 진급을 위한 혹은 퇴임을 앞둔 경영자에 대한 예우의 자리나 등기부상의 지위 쯤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⁹⁾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내실있는 감사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감사를 사외출신자로 선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사회제도와 관련해서는 비록 증권거래소의 상장기준을 정한 유가증권상장규정을 통해서이기는 하지만 1998년에 동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의 4분의 1(최소 1인)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동규정 48조의 5) 감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러한 노력은 전혀 없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제도가 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사외출신의 감사, 즉 사외감사의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소 괄

8) 예를 들면 鄭燦亨, “株式會社 監事制度의 改善方向” 上場協 제27호(韓國上場協議會, 1993 春季號) 62쪽.

9) 洪復基, “社外監事에 대하여” 商事法研究 제13집(한국상사법학회, 1994) 177쪽.

이상을 종합하면 현행법상 감사제도의 문제점은 주로 감사의 독립성 확보, 감사의 자격,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인 간의 업무연계, 그리고 감사기구의 구성원에 있어서 구조적 한계(사내출신감사)에 관한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감사의 선임방법과 감사회 제도 및 사외감사제도의 도입 필요성으로 정리·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먼저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범위에서 각국의 감사제도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Ⅲ. 각국의 감사제도

1. 개 관

우리나라의 경우 경영을 담당하는 이사와 경영을 감사하는 감사가 공히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는 의미에서 감사하는 기관과 감사를 받는 기관이 병립·대등적인 관계에 있다. 그리고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는 감사에 의한 감사와 이사회에 의한 감독에 의해 이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구조는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러한 구조하에서도 (i)감사제도의 강화에 중심을 둘 것인가 (ii)사외이사를 도입하여 이사회의 감독기능의 충실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1968년 9월에 공개된 “株式會社監査制度改正에 관한 民事局參事官試案”을 기점으로 하여 그 방향성을 (i)로 정한¹⁰⁾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극히 최근에는 현행 법체계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국식의 이사회제도에 근접한 경영감시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¹¹⁾.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998년 개정유가증권상장규정에서 보듯이 “사외이사를 통한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에 비중을 두려고 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에 대하여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는 이사회가 회사업무의 기본방침만을 결정하고 그 집행은 이사회가 선임하는 대표이사 내지는 임원(officer)이 담당하며 그 집행행위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감사위원회가 감독하는 체계, 즉 회사기구로서 감사기구는 따로 두지 않고 이사회의 관할 하에 감사기구(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 (one-tier system or board system).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Vorstand)와 그 이사

10) 森淳二朗, “監査役の構成原理とシステム”, 『企業の健全性確保と取締役の責任』(森本滋 외 2인 編, 有斐閣, 1997) 57쪽.

11) 日本コ-ポレート・ガバナンス・フォーラム, 코-보르트·가바넌스原則策定委員會, “코-보르트·가바넌스原則 — 新しい日本型企業統治を考える(中間報告) —” 商事法務 1476호(1997) 33쪽; “最終報告”(1998) <http://www.asahi-net.or.jp/~TN7MMRYM/Cg-principles-j.html> 참조.

를 선임·감독하는 감사회(Aufsichtsrat)가 이원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dual board system or tow-tier system)을 취하고 있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이사회)이 감사기관(감사회)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점에 있는데, 이는 업무집행기관과 감사기관이 병립적인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나 일본과 다르고, 독립의 감사기관을 두지 않고 이사회 산하의 소위원회 형태로 감사기구를 두고 있는 영미식과도 다르다.

비교법적 관점에서 보면 각국의 감사제도는 이처럼 크게 3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업회계에 관해서는 각국이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에 대하여 내부감사와는 별도로 회사 외부의 공인회계사와 같은 회사내부의 회계전문가에 의한 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인”, 일본의 경우는 주식회사의 감사 등에 관한 상법특례법에 의한 “회계감사인”, 영국은 회사법에 의한 “감사”(auditor), 미국은 1933년 증권법 및 1934년 증권거래소법 등에 기반한 사외공인회계사(independant public accountant)에 의한 “감사”(auditor), 그리고 독일의 경우는 독일상법(Handelsgesetzbuch)에 의한 “결산감사인”(Abschlussprüfer)제도를 두고 있다.

회계감사에 관해 특별히 회계전문가에 의한 감사를 강제하는 이유는 기업회계의 투명성은 단지 당해기업 내의 이해관계자(주주 및 회사채권자)에 국한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규모에 따라서는 국가경제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 점에서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전문감사인은 이른바 기업의 사회책임이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¹²⁾.

2. 미국

미국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회사내부사항에 관해서는 주회사법이 규제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감사제도에 관해 회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는 극히 드물고, 연방법상의 정보공시규제나 증권거래소의 상장규정 등에 의해 간접적으로 감사기구의 설치를 강제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감사기구는 독립된 회사의 기관으로서 존재하지 않고 단지 이사회에의 관할하에 구성되는 소위원회(감사위원회)의 형태로 존재하며 그리고 이 위원회가 감사관련업무를 총괄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다.

미국의 감사제도의 특징의 하나는 감사의 기능을 주주의 이익 보호에 한정하지 않고 널리

12) 참고로 EU의 유럽위원회가 1996년 7월에 공포한 자료에 의하면 회계감사인은 ① 재무제표의 정확성, ② 기업의 존속능력(going-concerning), ③ 사기·부정의 존재, ④ 법적준수의 의무 및 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하여 재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see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The Role, the Position and the Liability of the Statutory Auditor within the European Union, COM (96) 338 (1996) 3. 7.

일반투자가보호 나아가 일반대중에 대한 공적의무의 일환을 이루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¹³⁾.

(1) 감사위원회

미국의 경우 이사회는 (주)회사법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에 의해 구성되고 그 수는 3인 이상으로 정관에서 정할 것을 요구하는 주가 많다. 그리고 이사회는 직접 회사업무를 담당할 경영진(officer, 예를 들면 사장(president · chief executive officer · general manager), 부사장(vice-president), 회계담당임원(treasurer))을 선임하여 이 경영진에게 회사업무를 담당케 하고 이사회 스스로는 경영진의 경영을 감독하는 이른바 “경영감독기관”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감독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한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이다.

그러나 이 감사위원회에 관하여 그 설치를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고¹⁴⁾ 단지 ALI(미국법률협회)의 Restatement나 Business Roundtable의 Statement, 미국법조협회(ABA)의 이사가이드북(director's guidebook)¹⁵⁾ 혹은 미국공인회계사협회(AICPA) 산하의 감사기준위원회(Auditing Standards Board · ASB) 권고¹⁶⁾ 등에서 모델로서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권고하거나, 증권거래소의 상장기준에 의해 상장을 의도하는 기업에 한해 그 설치를 의무화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취해지고 있다.

먼저 증권거래소의 상장규칙에 의한 것으로는 1970년대 초에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기업의 부정지출이 사회문제화되면서 1977년에 상장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SEC의 요청을 받아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상장 및 상장유지의 조건으로서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한 것을 들 수 있다¹⁷⁾.

그 외 SEC는 미국의 전통적인 기업규제방법의 하나인 정보공시제도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강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1934증권거래소법의 위임장규칙을 통하여 감사위원회에 관한 상세한 정보공시를 요구하는 방법이 이에 해당한다¹⁸⁾.

여기서는 1982년에 제1시안이 발표된 이래 10년간의 논의를 거쳐 1992년에 최종안으로서 확정 · 발표된 ALI의 “회사통치의 원칙: 분석과 권고”¹⁹⁾(이하 “ALI 원칙”이라 함)에서 규정하

13) United States v. Arther Yong & Co., 465 U. S. 805(1984).

14) 단 예외적으로 Connecticut주에서는 주회사법으로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15)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Corporation, Banking and Business Law, Committee on Corporate Laws, “Corporate Director's Guidebook”, 33 Bus. Law. 1591(1978). Corporate Director's Guidebook 1994 edition”, 49 Bus. Law. 1247(1994).

16) ASB의 활동에 관한 소개문헌으로서는 片木晴彦, “會計監査人の職務と責任” 『廣島法學』 9권 4호(1985) 49쪽.

17) NYSE Listed Company Manual § 303.

18) Schedule A Item 7(e)(1). ALI Principles, infra note 19, at 140.

19) ALI,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Final Draft, 1992)[hereinafter ALI Principles].

고 있는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먼저 구성에 있어서는 ALI 원칙 § 3.05는 대규모공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즉 사외이사) 3인 이상으로 그리고 그 과반수는 상급임원(senior executives)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들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²⁰⁾.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기능에 관해서는 ALI 원칙 § 3A. 03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외부감사인(external auditor)의 추천 ②외부감사인의 보수, 외부감사인과의 계약내용 및 독립성에 관한 심사, ③내부감사담당임원(senior internal-auditing ececutive)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심사, ④외부감사인과 이사회간 및 내부감사담당임원과 이사회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채널로서의 역할, ⑤다음의 사항에 관한 심사, i)외부감사의 결과 · ii)외부감사에 의한 감사보고서 · iii)감사관련경영진의 문서 · iv)외부감사인의 권고에 대한 경영진의 반응 · v)내부감사의 보고서 등, ⑥연차제무제표, 외부감사인의 감사증명 등에 관한 심사, ⑦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의 타당성에 관하여 외부감사인과 내부감사담당임원과의 협의 및 검토, ⑧회계방침 및 관행 등에 관한 검토 등이다.

(2) 사외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

위에서 살펴본 감사위원회의 기능으로부터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의 경우 감사위원회와는 별도로 다음의 두 유형에 해당하는 감사기구가 존재한다(이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임). 첫째는 회사내부에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회사내부조직으로서 임의로 두고 있는 “내부감사”(internal auditor)이고, 둘째는 회사외부에서 기업회계업무만을 전담하는 회계전문가인 “외부감사인”(external auditor or dependant accountant)이다. 이런 감사기구는 감사위원회와 연계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 중 외부감사인의 경우 그 선임은 통상 경영진에 의해 지명된 후보자가 감사위원회에 제안되고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사회가 선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외부감사인의 자격에 관해서는 각주의 공인회계사법(Accountancy Law)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에 따른 자격자가 아니면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그리고 외부감사인의 보수는 기본적으로 감사계약에 의하며 독립성이나 회사와의 이해관계에 관해서는 Regulation S-X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AICPA의 직업행위규정에 의한 자율규제도 이루어지고 있다.

외부감사인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법률에는 다음과 같은 聯邦證券關聯法律이 있다.

첫째는 1933년 증권법 및 1934년 증권거래법이다. 동법률은 SEC에 제출하는 등록설명서

20) ALI Principles, at 138.

나 각종 보고서 중의 재무제표 등 회계관련서류에 대해서는 사외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증명을 첨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²¹⁾.

둘째는 1970년대 미국기업의 부정지출사건을 계기로 하여 1977년에 제정된 “해외부정관행 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of 1977)이다.

동법은 1934년 증권거래소법에 30조 A를 신설하여 미국기업이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외국의 공무원에 대하여 금전 등 이익공여를 하는 것은 미국의 국내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하는 한편, 증권거래소법 13조(b)(2)²²⁾를 개정하여 증권거래소법적용기업에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혹은 적용가능한 지표에 따라 작성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 기업회계가 합리적이며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제도(internal accounting controls system)를 마련하여 유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셋째는 1995년에 제정된 증권민사소송개혁법(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Act 1995)이다. 이 법률은 聯邦證券諸法에 근거한 소송의 남용(이른바 “私的訴權”의 남용) 방지를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1934년 증권거래소법에 10조 A²³⁾를 신설하여 외부감사인의 감사방법 등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은 먼저 감사보고서와 관련하여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①재무제표의 금액산정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행위를 발견하기 위한 절차, ②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관련당사자의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③피감사회사가 차회계연도까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관한 평가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외부감사인의 의무로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외부감사인은 감사과정에서 중대하고 그 개연성이 극히 높은 위법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먼저 적당한 레벨의 경영진에 보고하고 동시에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둘째 이러한 보고·통지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시정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등의 사유로 외부감사인이 감사기준 상의 탈법 혹은 감사직을 사임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얻은 경우에는 이러한 결론을 기재한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셋째 이 보고서를 받은 이사회는 1영업일 이내에 SEC에 서면으로 통고하고 그 서면의 사본을 당해감사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송부가 없으면 외부감사인은 사임할 수 있다.

3. 영국

영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독립의 감사기관으로서 감사제도를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이사회 산하에 회사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비집행이사”(non-executive director)(사외이사)로도

21) 1933 Securities Act, 15 U.S.C. § 77a-77z(1994), Sched. A(25)(26), 1934 Securities Exchange Act Sec. 13, 15 U.S.C. § 78m(a)(1994), 17 C.F.R. § 210. 2-01(1992).

22) 1934 Securities Exchange Act Sec. 13(b)(2), 15 U.S.C. § 77m(b)(1994).

23) 1934 Securities Exchange Act Sec. 10A(a)(b), 15 U.S.C. § 78a et seq.

번역됨)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 위원회와는 별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의 경우 우리나라의 외부감사인에 해당하는 감사(auditor)가 영국회사법에 의해 선임이 의무화되고 있다(1985년 회사법 384조).

(1) 감사위원회

커터베리위원회의 보고서²⁴⁾는 이사회에 대해 적어도 비집행이사 3인 이상으로 그리고 그 과반수는 경영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의 판단을 하는데 실질적인 장애가 되는 비즈니스 또는 그 외의 이해관계가 없는 자들로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권고하고(모범관행규정(Code of Best Practice) § 4.3, 2.2) 그리고 註記 11에서는 감사위원회의 구성, 권한, 의무, 기능에 관하여 권고사항으로서 추가로 제언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a)감사위원회는 이사회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를 지며, 적어도 연 2회는 회합을 가져야 하고, (b)감사위원회의 구성원은 비집행이사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구성원 중 과반수는 회사업무를 담당하는 “집행이사”(executive director)로부터 독립된 자이어야 한다. (c) 외부감사(auditor)·경영조직의 일부로서 내부감사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장(internal auditor) 및 회계담당이사(finance director)는 원칙적으로 감사위원회에 참가하여야 하고, (d)그리고 감사위원회는 “집행이사”를 배제한 채 적어도 연 1회는 이런 감사들과 회합을 가져야 한다. (e)감사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범위 내의 사항에 관해서는 조사권한을 가지며 이를 위해 필요한 財源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완전한 접근권을 갖는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사외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사외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가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f)위원회의 멤버는 연차보고서에 명단이 공개되어야 한다.

(2) 감사(auditor)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임기는 원칙적으로 1년이다(영국회사법 384조 1항). 그 선임 절차는 통상 이사회가 감사위원회의 선임권고를 받아 감사후보자를 제안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감사의 자격은 엄격히 제한되는 데, 인가감독기관(Recognised Supervisory Bodies · RSBs)의 회원으로서 그 기관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감사로서 필요한 자격을 갖고 있는 자에 한해 선임자격이 인정되며(1989년 회사법 25조 1항, 동 32조 2항), 피감사기업 등과 이해관계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로 선임될 수 없다(1989년 회사법 27조 1항, 2항). 보수는 주주총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사전에 정해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라 정해진다(1985년 회사법 390조 A조 1항).

24) Report of the Committee on the Financial Aspects of Corporate Governance(1992).

그 외 감사의 대상은 연차회계서류(annual accounts · 우리나라의 재무제표에 해당) 및 이 사보고서(directors' report · 우리나라의 영업보고서에 해당)이며(1985년 회사법 226조 1항, 227조 1항 · 2항 등), 감사는 주주총회에 제출되는 모든 회계관련서류에 관해 감사하고 주주 앞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의무를 진다(동법 235조 1항). 감사보고서는 연차회계서류 등과 함께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모든 자에게 총회 21일 전까지 발송되며(동법 238조 1항), 주주총회개최시 이외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는 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것에 의해 무료로 이러한 서류를 받아 볼 수 있다(동법 239조 1항). 그리고 이러한 서류는 주주총회에 비치 또는 등기관에 제출되어 공중에게 공개된다(동법 241조, 242조)²⁵⁾.

또 감사보고서의 작성방법에 관해서는 회사법상의 규제(1985년 회사법 235조 2항 · 3항, 237조 등) 뿐만 아니라 1991년에 창설된 APB(Auditing Practice Board)와 같은 감사관련단체가 공포한 감사기준(statement of auditing standards · SAS)에 의한 규제도 이루어지고 있다²⁶⁾.

특히 1995년 4월의 감사기준(SAS) 610호²⁷⁾는 감사과정에서 감사가 회계 및 회사내부의 통제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한 때에는 감사은 서면으로 이사, 감사위원회, 혹은 적당한 레벨의 업무담당자(management)에게 적시에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4. 독일

독일의 경우는 이상의 영미와는 달리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주식회사의 독립의 기관으로서 감사기구가 따로 존재한다. 먼저 독일의 주식회사의 기관분화와 권한분배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주식법은 주식회사의 기관을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Hauptversammlung), 업무집행기관인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Vorstand), 그리고 업무감독기관인 감사회(Aufsichtsrat)로 분화하고 있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와 같다. 그러나 이 필요적 기관의 권한분배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와는 크게 다르다.

즉 주주총회는 회사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결정권을 갖고 있다²⁸⁾는 의미에서 그 최고

25) 그외 상세는 Gower, Principles of Modern Company Law (5th edition, 1992), pp 477-500.

26) 이에 관한 상세는 小柿徳武, "會計監査人の情報提供機能とコ-ポレ-ト・ガバナンス(-)" 「民商法雑誌」 257쪽(1997) 이하 참조.

27) Accountancy Apr. 1995, pp. 146-148.

28) 정관변경 등 기본적조직에 관한 권한이나 매년도의 이익처분, 이사회 감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특별대리인의 선임권(주식법 119조, 142조, 147조 1항) 등, 참고로 1998년 주식법개정에서는 이사와 감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의 요건을 완화하였다. 즉 이사회 감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총래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나 자본의 10%이상의 소주주만이 이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주식법 147조 1항) 이 10%의 지주요건은 너무 엄격하여 사실상 소주주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기관성이 부정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권한은 상대적으로 약하여 이사에 대한 선임·해임권은 없고 단지 감사에 대한 선임·해임권만 갖는다. 그러나 감사에 대한 선임·해임권도 공동결정법(Mitbestimmungsgesetz)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의 반수는 종업원·노동조합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에 주주총회가 선출할 수 있는 감사는 감사회구성원의 반에 밖에 미치지 않는다.

이에 비해 감사회는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에 대한 선임·해임권이 있으며(주식법 84조 1항, 3항), 또한 정관 또는 감사회의 결의로써 일정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가 결정할 시에는 이사회는 감사회의 동의를 요구할 수도 있다(주식법 111조 4항).

또 이사회는 개개인이 업무집행권과 회사대표권을 갖는 이사(Vorstandsmitglieder)의 단순한 집합체에 불과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결정기관이 아니다. 그리고 이사회가 한 의사결정에 근거하여 업무를 집행하며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제도 없다.

이런 점에서 보면 독일의 감사회는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주주총회의 기능의 일부도 수행하면서 동시에 이사회와의 관계에서는 상위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질 뿐만 아니라 감사기관으로서 성격과 함께 경영관리기관적 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는 것이다.

(1) 감사회

독일주식법은 업무집행기관과 업무를 감독하는 감독기관을 각각 별개의 기관으로 구성하는 전형적인 이원적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한 것은 1861년에 제정된 보통독일상법전(Allgemeine Deutsche Handelsgesetzbuch, ADHGB)이고, 이 시스템이 독일 주식회사에서 확고히 구축된 것은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와 감독기관을 엄격히 준별하여 감사회를 감독기관으로 순화한 1937년 주식법이다²⁹⁾. 그 후 이 시스템은 1965년 주식법을 거쳐 1998년 주식법의 개정³⁰⁾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최근의 개정논의, 즉 1996년 11월 26일에 독일연방사법성이 공포한 개정초안인 “기업영역에 있어서의 지배와 투명성확보의 법률”(Referentenentwurf eines Gesetzes zur Kontrolle und Transparenz im Unternehmensbereich(KonTraG)(이하 “개정초안”이라 함)과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1998년 “주식법을 비롯한 기업관련법의 개정” 과정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한 대형기업의 도산·부정사건을 배경으로 이러한 이원적시스템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기능에 의문을 제기하고 미국식의 일원적 시스템으로 전환을 주장하는 등³¹⁾ 비록 소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개정주식법은 소수주주권의 요건을 종래 자본의 10% 이상에서 5%이상 또는 백만 마르크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로 완화하였다(개정주식법 147조 3항).

29) 독일 감사회의 연혁에 관한 상세는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Bericht über die Verhandlungen der Unternehmensrechtskommission, Tz. 226(1979).

30) 1998년 주식법 등의 개정에 관해서는 林重鎬, “獨逸의 株式會社 監査制度” 「會社法の 諸問題」 (李範燦 編著, 1998) 383쪽 이하 참조.

수이기는 하지만 회의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 이사회와의 관계 전술한 바와 같이 감사회는 이사회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권(주식법 111조 1항)과 함께 그 구성원인 이사의 선해임권을 가지며(주식법 84조 1항, 3항)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998년 개정에 의해 최소한 연 4회 이상(종래는 연 2회)은 개최되어야 한다(개정주식법 110조 3항).

감사회의 업무감독은 업무집행상의 모든 처분행위의 적법성(Rechtsmässigkeit)뿐만 아니라 그 합목적성(Zweckmässigkeit) 및 경제성(Wirtschaftlichkeit)에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며³²⁾, 이사회의 업무집행권은 감사회에 위임할 수 없고(주식법 111조 4항) 이와 관련하여 감사 역시 이사회나 업무집행대리인(지배인·상업사용인 등)이 될 수 없다(주식법 105조 1항). 그리고 감사는 그 직무를 타인에게 대행시킬 수 없음(주식법 111조 5항)은 물론이다.

이와 같이 이사회와 감사회의 권한은 엄격히 준별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감사회는 특정업무집행에 관한 동의권이나 의사표명권 등을 통하여 정책결정이나 계획결정의 단계에서부터 이사의 업무집행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감사기관으로서의 성격만 갖는 것이 아니라 경영관리기관적 성격도 아울러 갖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³³⁾.

2) 권 한 감사회의 권한에는 위에서 살펴본 것 이외에도 다양한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i)회사의 재산상태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권한으로서 회사의 장부·서류 및 재산(현금·유가증권·상품 등)의 조사·열람권(주식법 111조 2항)이 있으며, (ii)감사회에 의한 사전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권한으로서는 전술한 ①특정업무집행에 관한 동의권 이외에도 ②업무집행에 관하여 이사회로부터 보고를 받을 권한(주식법 90조 1항), 이것에 대응하는 ③감사회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청구권(주식법 90조 3항) 및 ④수익성관련 중요업무집행사항에 관한 감사회의 의사표명권(주식법 90조 2항)이 있다. 특히 1998년 개정주식법에서는 감사회의 감독·감시기능 중 회사장래에 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감사회에 대한 보고사항으로 구체적인 경영계획은 물론 생산·판매·인사 등에 관한 계획까지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개정주식법 90조 1항 1호).

(iii)그 외의 권한사항으로서는 ①연도결산서(Jahresabschluß)(우리나라의 “재무제표”에 해당) 및 영업보고서(Lagebericht)에 대한 감사·검사권(주식법 170조, 171조), ②연도결산서 및 영업보고서 승인·확정권(주식법 172조)³⁴⁾, ③회사와 이사간의 거래 및 소송 등에 있어서 회사대표권(주식법 112조) 등이 있다

31) D. Feddersen, P. Hommelhoff, U. H. Schneider(Hrsg.), Corporate Governance, Einführung, S.4(1996).

32) Hans-Joachim Mertens in Kölner Kommentar zum AktG, § 111, Rdn. 11(2. Aufl. 1996).

33) Marcus Lutter und Thomas Kremer, Die Beratung der Gesellschaft durch Aufsichtsratsmitglieder, ZGR 1992, S. 90.

34) 이와 관련 주주총회는 감사회에서 승인·확정된 연도결산서의 범위내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결의권한 가짐(주식법 172조, 174조).

(2) 결산검사인

결산검사인(Abschlussprüfer)제도는 우리나라의 외감법상의 외부감사인과 유사한 성격 갖는 것으로 회사기관은 아니며 단지 회사 외부에서 회계전문가로서 감사회를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³⁵⁾.

1) 선임·임기·자격 일정규모이상의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독일상법 316조 1항에 의해 결산검사인의 선임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결산검사인은 감사회의 제안에 의해 주주총회가 선임한다(동법 318조, 주식법 124조 3항, 119조 1항 4호). 다만 종래에는 결산감사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사회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었으나(개정전상법 318조 1항) 금번 주식법개정에 의해 계약체결권이 감사회로 이관되었다(개정주식법 111조 2항). 이것은 종래 위임계약을 통한 이사회의 결산감사인에 대한 영향력행사가 결산감사인의 독립성을 해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떨어 뜨린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결산감사인의 임기는 각영업년도마다 선임결의가 필요한 것과 관련하여(상법 318조 1항) 원칙적으로 1년이며 보수는 감사계약으로 정한다. 경제검사인(Wirtschaftsprüfer) 또는 경제감사회사(Wirtschaftsprüfungsgesellschaft)만이 결산감사인이 될 수 있으며(상법 319조 1항) 그 자격은 “경제검사인직무규정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eine Berufsordnung der Wirtschaftsprüfer vom 24. Juli 1961)에서 정하고 있다.

2) 감사의 대상·감사보고서제출 등 결산감사는 회계장부를 포함한 연도결산서 및 영업보고서를 그 대상으로 하며(상법 317조 1항),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이사가 작성하는 영업보고서에 기업의 장래발전에 관해서도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기재의 적정성 및 기능성여부도 감사의 대상으로 되었다(개정상법 289조 1항, 317조 2항).

결산검사인은 감사증명(Bestätigungsvermerk)을 한 연도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상법 321조 1항 3항, 322조 1항), 이사는 이것을 지체 없이 감사회의장에 제시하여야 한다(주식법 170조 1항). 그리고 감사회는 결산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기하여 감사를 개시하여 1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주식법 171조 3항)³⁶⁾.

연도결산서 및 영업보고서는 원칙적으로 감사회의 승인에 의해 확정된다(주식법 172조). 다만 종래에는 감사회는 연도결산서의 심의 과정에서 감사회 전체회의나 감사회내의 결산위원회에 결산감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데 지나지 않았으나, 금년의 개정에서 이 출석요

35) Schwegler, Die Stellung des Wirtschaftsprüfers zu den Organen, BB 1995, 1683.

36) 감사증명이 붙은 연도결산서 및 감사회의 감사보고서는 영업보고서 및 이익처분안과 함께 결산 후 8개월 이내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앞서 총회일 1개월 전에 이루어지는 소집통지시 주주에게 송부되고 또 열람을 위하여 회사에 비치된다(주식법 175조 2항). 특히 대회사의 경우에는 연방공보에 의한 공고 및 상업등기소에서의 공시도 이루어진다(상법 325조 2항, 주식법 175조 2항).

구권은 폐지되고 대신에 결산감사인인 출석과 감사결과의 보고가 의무화되었다(개정주식법 171조 1항). 이는 종래 출석요구권을 행사한 예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특히 감사회의 재무면의 감시기능이 형해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하면서 한편으로는 결산감사인인 감사회의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5. 일본

일본의 감사제도는 영미식이나 독일식과 비교해 볼 때 구별되는 점이 적지 않다.

첫째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내지 감사는 이사회와 감사라는 각각 독립된 기관에 의해 병립·대등적 관계에서 이중적으로 이루어지며, 둘째 일정규모이상의 회사의 경우에는 사외감사와 사내감사로 구성되는 감사회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셋째 감사의 권한은 회사의 규모를 기준으로 차별화하여 중·대규모회사의 경우에는 회계감사와 업무감사의 양쪽을 담당하지만 소규모회사의 경우에는 회계감사만으로 국한된다. 그러나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의 경우에는 회계감사에 관하여 회계전문가에 의한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제외국과 차이가 없다.

(1) 상법특례법에 의한 법규제의 차별화

일본의 감사제도에 대한 법규제는 1974년 상법개정시 “주식회사의 감사등에 관한 상법특례법(이하 “상법특례법”이라 함)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하여 감사의 직무권한의 범위나 회계감사인인에 의한 감사 그리고 감사회의 설치에 있어서 회사의 규모를 기준으로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상법특례법은 주식회사를 자본규모 등을 기준으로 (i)대회사(자본금이 5억엔 이상 또는 부채합계액이 200억엔 이상인 주식회사), (ii)중회사(자본금이 5억엔 미만 1억엔 이상인 주식회사), (iii)소회사(자본금이 1억엔 이하인 주식회사)로 구분하여 중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법상의 감사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나머지 대회사와 소회사에 대해서는 상법특례법이 각각 그 특례를 정하고 있다.

먼저 “대회사”의 경우에는 監事は 업무 및 회계 양면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며(상법 274조 1항) 특히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에 관한 회계감사는 監事の 감사 외에 회계감사인인 감사도 추가로 받도록 하는 한편(상법특례법 2조), 감사는 3인 이어야 하고 그 중 1인 이상은 취임전 5년간 회사 또는 그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이 아니었던 자로 하여야 한다(이른바 “사외감사”제도)(상법특례법 18조 1항). 또한 감사의 互選에 의해 상근감사를 정하여야 하고(상근감사제도)(동법 18조 2항) 그리고 감사전원으로 감사회를 조직하여야 한다(감사회제도)(동법 18조의 2).

“중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는 대회사의 감사와 마찬가지로 업무감사와 회계감사 양쪽을 직무권한으로 하나 회계감사의 경우에는 대회사와는 달리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가 의무화되지 않고 단지 감사에 의한 감사만으로 족하다.

그리고 그 실정상 어느 정도 감사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는 “소회사”의 경우는 감사의 직무권한은 회계감사에 국한된다(상법특례법 22조, 25조). 그 결과 소회사의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는 불필요하며 또한 감사의 직무권한도 업무감사에는 미치지 않는다.

이하 논술의 편의상 1993년 상법개정에 의해 도입된 제도인 사외감사제도와 감사회제도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2) 사외감사

사외감사란 개정감사특례법 18조 1항에서 말하는 자, 즉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대회사의 감사 중 1인 이상이어야 하는 자로서 “그 취임전 5년간 회사 또는 그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이 아니었던 자”를 뜻한다.

사외감사제도의 취지는 사내자에 의한 감사의 한계를 사외자가 보완함으로써 제3자적 입장에서 보다 객관적인 감사를 가능하게 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이질적인 사외인재를 감사의 일원으로 함으로써 “감사의 활성화”와 “경영에 대한 발언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나³⁷⁾ 일본의 사외감사제도에 대해서는 비판이 적지 않다.

그 비판의 핵심은 사외감사의 사외성에 관한 것인데, 첫째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은 감사의 겸직금지규정(일본상법 276조, 그 내용은 우리나라상법 411조와 동일)을 감사특례법상의 대회사의 감사의 1인에 관하여 취임전 5년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법조문에 따르면 현재 모회사의 이사 또는 사용인으로서 재직하고 있는 자일지라도 자회사의 감사로 파견되면 사외성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는 점이다³⁸⁾³⁹⁾.

(3) 감사회

감사회는 상법특례법 18조의 2 제 1항에 의하여 동법상의 대회사에 있어서 “감사 전원”으로 조직된다⁴⁰⁾.

37) 吉戒修一・大谷洗大, “社外監査役制度の趣旨およびその運用” 商事法務 1332호(1993) 11쪽.

38) 森本滋, “日米構造問題協議と商法改正” 民商法雑誌 108권 4・5호(1993) 553쪽, 556쪽.

39) 이와 관련하여 “취임전 5년간”이라는 문언을 삽입하지 않고 완전한 사외자를 요구한 쪽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또 입법론으로서의 사외감사의 수를 “감사 3인 중 2인”으로 하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사외감사가 소수파일 때는 다수파의 사내감사에 의해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지 못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田中誠二, “平成五年商法改正法管見” 商事法務 1336호(1993) 5쪽.

40) 이것은 사외감사제도의 도입과도 관련하는 것으로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감사회에서 역할분담을 통하여 각 감사가 행한 감사결과를 상호 교환하고 그 과정에서 정보의 공유, 감사에 대한 의견개진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감사활동이 가능하게 되고 또한 이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감사회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감사개개인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보다 경영권에 대한 영향력이 훨씬 클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감사회는 감사 개개인이 스스로의 책임과 권한으로 감사직무를 수행한다는 이른바 “獨任制”를 근간으로 하는 협의기관(meeting)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⁴¹⁾, 그리하여 감사회의 기능도 집단으로서 감사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복수의 감사간에 조사사항에 관한 역할분담, 감사결과에 대한 정보 및 의견교환,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적절한 감사의견이 표명·형성되도록 하는 것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⁴²⁾.

감사회의 권한에 관하여 1993년 개정법은 감사의 獨任制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감사의 권한행사가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감사의 권한 중 (i)협의체인 감사회가 행사하는 것이 적합한 것과 (ii)감사가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분류하여 전자에 한해 감사회의 권한으로 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각 감사의 고유권한으로 하고 있다.

먼저 종래의 감사의 권한사항 중 감사회가 행사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보아 감사회에 이관한 권한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계감사인의 지위에 관련하는 권한이다. 구체적으로는 ①이사가 하는 會計監査人の選任, 不再任 및 解任의 議案에 同意할 권한(상법특례법 3조 2항, 5조의 2 제3항, 6조 3항), ②會計監査人の選任, 不再任 및 解任의 議題 및 議案의 제안청구권(동법 3조 3항, 5조의 2 제3항, 6조 3항), ③會計監査人の 해임권(동법 6조의 2 제1항) 및 회계감사인의 해임의 경우 주주총회에 보고할 의무(동법 6조의 2 제2항), ④임시회계감사인의 선임권(동법 6조의 4 제1항)이다.

둘째는 이어나 회계감사인 등으로부터 보고 혹은 서류를 수동적으로 수령할 권한이다. ㉠ 회계감사인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권한(상법특례법 8조 1항), ㉡이사 또는 청산인으로부터 계산서류 및 부속명세서를 수령할 권한(상법특례법 12조, 19조 1항, 상법 420조 1항),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받을 권한(상법특례법 13조 1항), ㉣감사로부터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조사결과를 보고받을 권한(상법특례법 14조 1항), ㉤이사로부터 보고를 받을 권한(상법특례법 19조 1항, 상법 274조의 2), ㉥감사로부터 직무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을 권한(상법특례법 18조의 2 제3항)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권한은 각 감사가 보고를 받지 않더라도 감사회의 구성원 중 누군가가 보고를 받고 그 자로부터 다른 감사에게 보고가 이루어지면 족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셋째 감사보고서의 작성권한(상법특례법 14조 2항 내지 4항)도 감사회로 이관되었는데 감사간에 감사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감사의 의견은 附記할 수 있다(상법특례법 14조 3항)⁴³⁾.

41) 前田庸, “平成五年商法の改正要綱について[上]” 商事法務 1315호(1993) 46쪽. 이 협의체방식은 감사의 주체는 감사로 하면서 일정의 경우에 한해 감사회가 감사의 권한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것은 독일주식법이나 프랑스신주식회사법이 채택하고 있는 감사회제도에 비하여 독특한 것인데 이들 나라에서는 감사의 주체를 감사회(이른바 협의기관)(board)로 하고 감사는 단지 그 구성원으로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42) 片木晴彦, “監査役會と監査役の獨任制” 商事法務 1336호(1993) 18쪽.

43) 이것은 감사의 독립제기관으로서의 장점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기된 의견 중 하나라도 회계감사인의 감사결

이에 대해 감사회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새롭게 감사회의 권한 사항으로 된 것은 “감사의 직무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결정권”이다.

즉 감사회는 법률로써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 결의로써 감사의 방침,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방법 기타 감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감사특례법 18조의 2 제2항 본문). 그러나 감사회는 이 “감사의 직무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이용하여 개개의 감사의 권한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감특 18조의 2 제2항 단서)⁴⁴⁾45).

(4) 외부감사(회계감사인)

회계감사인제도는 우리나라의 외감법상의 외부감사인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회사의 기관이 아니며 단지 회사 외부에서 회계전문가로서 감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1) 선임·해임·임기·자격 상법특례법상의 대회사(이하 “대회사”라 함)의 경우 회계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으며(동법 2조, 4조), 회계감사인은 이사회의 제안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선임한다(동법 3조 1항). 다만 회계감사인의 선임의안 제출시 이사회는 감사회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동법 3조 2항). 감사회는 그 과반수의 동의로써 이사회에 대해 회계감사인의 선임에 관한 의제 및 의안을 제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3조 3항).

회계감사인의 해임은 보통결의에 의하나(동법 6조 1항) 회계감사인의 지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사가 회계감사인의 해임의안을 총회에 제출하려면 감사회의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또 감사회는 그 과반수의 동의로써 이사에 대해 회계감사인의 해임의제를 제출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동법 6조 3항), 회계감사인에게 직무상의 의무위반·직무태만·비행, 직무수행을 곤란케하는 심신의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회전원의 동의로써 해임할 수 있다(동법 6조의 2, 18조의 3 제1항 단서).

과가 상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것이 있을 때에는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상법특례법 16조 1항).

44) 감사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이사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있다. 먼저 감사회의 소집권은 모든 감사에게 부여되고 있으며(상법특례법 18조의 3 제2항, 상법 259조 1항 본문), 감사회의 소집은 정관에 정함이 없는 한 1주일 전에 각 감사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안된다(상법특례법 18조의 3 제2항, 상법 259조의 2). 또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곧 바로 감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상법특례법 18조의 3 제2항, 상법 259조의 3). 그리고 결의 방법에 관해서는 감사회의 과반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회계감사인의 해임결의의 경우에는 전원 일치에 의한다(상법특례법 18조의 3 제1항).

45) 이상에서 언급한 것 이외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감사 개개인의 권한사항으로 남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①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사(상법 274조 1항) 및 재무제표의 감사(상법 281조 2항)와 ②그것에 관련하는 각종 조사권(영업보고청구, 업무·재산상황조사권·회계감사인에 대한 보고청구권(상법 274조 2항, 274조의 3, 상법특례법 8조 2항 등)), ③이사회 및 주주총회관련 권한(이사회출석권·의견진술권(상법260조의 3 제1항), 同소집청구권·소집권(상법 260조의 3 제3항, 4항),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상법 260조의 3 제2항), 주주총회에서의 설명의무(상법 273조의 3), ④감사의 선임·해임에 관한 의견진술권(상법 275조의 3), ⑤보수(상법 279조) 및 감사비용 등(상법 279조의 2)에 관한 권한, ⑥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상법 275조의 2), ⑦이사와 회사간의 소송에 있어서 대표권(상법 275조의 4), ⑧각종 소송제기권(상법 247조 1항, 280조의 15, 380조, 381조, 415조, 428조 등)이 그것이다.

회계감사인의 자격은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에 한정되며(동법 4조 1항, 5조) 또 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인은 회사와 특별한 인적관계나 경제적 관계가 없어야 한다(동법 4조 2항).

회계감사인의 임기는 취임 후 1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이지만(동법 5조의 2 제1항), 감사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동법 5조의 2 제2항).

2) 직무권한 회계감사인에게는 감사와 거의 동일한 직무권한이 부여되고 있다(상법 274조 내지 274조의 3). 즉 회계감사인은 언제든지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사의 회계장부·서류의 열람·등사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이사 및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에 대해 회계의 보고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특례법 7조 1항), 회사의 업무·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회계감사인의 이러한 회계보고청구권은 자회사에 대해서도 미치며 필요한 때에는 보고를 청구한 사항에 관하여 자회사의 업무·재산상황을 조사할 수도 있고 이 경우 자회사는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다(동법 7조 1항 내지 4항).

또 회계감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해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회계감사인은 이것을 감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8조 1항). 회계감사인의 직무는 본래 회계감사에 국한되고 이사의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것은 직무가 아니지만 이사의 부정행위 등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감사회나 업무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에게 보고토록 함으로써 감사전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회계감사인은 감사계약에 근거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법정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지만(상법특례법 13조) 정기총회가 특별히 회계감사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결의를 한 때에는 회계감사인은 그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동법 17조 2항).

IV. 각국의 감사제도의 同異

1. 영미법과 독일법의 비교

영미법과 독일법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립된 회사의 기관으로서 감사기구를 두고 있으나 얹으나라는 형식적인 면과 이것으로부터 파생되는 機關 간의 구체적인 권한분배라는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다르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 차이 만큼 그 실질적인 내용이나 기능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느냐 하면 반드시 그렇지 않은 않다.

첫째, 영미법이나 독일법은 공히 기업회계에 관한 한은 사내감사기구와는 별도로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외의 회계전문가에 의한 감사를 의무화하

고 있으며 선임절차에 있어서도 최종선임권이 이사회(미국)에 있던 주주총회(영국·독일)에 있던 감사위원회나 감사회는 선임권이나 선임제안 등의 형태로 반드시 개입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외부감사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며 또한 이 과정이 있음으로 인하여 사외감사의 독립성은 한층 더 제고될 수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둘째, 외부감사인인 경우 특히 영국에 있어서는 최종선임권이 주주총회에 있는 것과 관련하여 그 독립성에 관해 의문시하는 견해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⁴⁶⁾ 적어도 사내감사기구의 구성원, 즉 영미법상의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나 독일법상의 감사회의 감사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감사회가 이사에 대한 선임·해임권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이사회의 상위기관으로서 위치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일원적시스템의 영미법에 있어서도 고용관계의 유무 뿐만 아니라 독자적 판단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업적 관계 혹은 이해관계의 존부와 같은 실질적인 기준에 의하여 사외이사의 사외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획일화된 고용관계나 인적관계만으로 사외성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훨씬 높은 사외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사내감사와 사외감사간의 업무연계와 관련해서는 회의체인 감사위원회나 감사회가 외부감사와 내부감사간 혹은 외부감사와 이사회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채널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러한 회의체에 외부감사의 출석과 보고를 의무화하거나 회의체에서 감사관련담당자(예를 들면 회계담당이사, 사외전문가, 회사내부감사조직의 장)와의 회합을 강제 또는 권고함으로써 외부감사와 내부감사간의 효과적인 업무연계를 꾀하고 있다.

이외에도 영미의 일원적시스템과 독일의 이원적시스템은 발전을 거듭하면서 기능의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다.

즉 영미법에 있어서는 업무집행의 결정과 그 감독이 형식적으로는 이사회라는 하나의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감독기능은 실질적으로는 사외이사 혹은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에 위임되고 있고,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이에 관한 의사결정도 이사회에 의해 선임된 경영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실제의 운용에 있어서는 업무집행기관은 사장, 부사장 등으로 대표되는 상급경영진이고 이사회는 단지 감독기관으로 기능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독일법의 경우는 종래부터 이미 감사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이나 감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이사회에 대해 동의를 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또 이사회가 조직상·재무상 중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감사회는 이사회와 협의하고 조언을 할 의무까지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점⁴⁷⁾을 고려하면 감사회는 비록 독일주식법상은 이원적 제도하에서 감독기관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업무집행사항에 관해서 상당부분 관

46) 영국의 경우에도 이사회가 추천하는 후보자가 주주총회에서 그대로 감사로 선임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Saleem Sheikh / William Rees, Corporate Governance & Corporate Control, 231~32 (1995).

47) Marcus Lutter und Gerd Krieger, Recht und Pflichten des Aufsichtsrats, S. 44-47(3Auffl., 1993).

여하고 있고 보기에 따라서는 일원화한 기관이라고 할 수도 있다⁴⁸⁾.

이와 같이 영미와 독일의 양제도는 실질적인 기능면에서는 이미 상당히 근접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양제도의 우열을 판단한다는 것은 그다지 실익이 있는 작업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다만 전통적으로 이야기되어 온 양제도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영미식의 일원적 시스템의 장점으로서 업무집행기관과 감독기관이 일원화됨으로써 감독에 필요한 정보의 교류가 이원적시스템에 비해 용이하고, 업무집행기관과 감독기관이 단일기관에 소속됨으로써 양 기관간에 밀접한 상호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집중적인 감독이 가능하며 특히 회사의 경영전략이나 장기계획의 책정단계에 있어서 협의나 조언의 형태로 사전 감독이 용이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반면 업무집행의 결정과 그것에 대한 감독이 동일기관에서 행해지므로 감독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며 외부로부터는 보이지 않는 역학관계에 의한 특정인의 양향력 행사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반해 독일식의 이원적 시스템의 경우에는 그 장점으로서 업무집행기관과 감독기관이 제도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며 감독기관의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높고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적절한 감독을 수행하기가 쉽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반면 감독기관과 업무집행기관의 제도적 분리로 인하여 감독은 아무래도 사후감독이 중심으로 되고 회사의 경영전략이나 장기계획의 책정에 대한 사전예방적인 감독에는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⁴⁹⁾.

2. 우리나라법과 일본법의 비교

일본의 감사제도는 적어도 1993년 개정 전까지만을 보는 한에 있어서는 외부감사에 의한 회계감사가 의무화되는 회사의 범위가 우리나라보다는 세분화되어 있고 또한 감사의 직무범위가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제외하고는⁵⁰⁾ 법체계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1993년 상법개정을 통해 사외감사제도와 감사회제도가 도입된 것을 계기로 하여 대회사의 경우 감사의 주체는 사실상 감사회가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각종 제안에서는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회의 과반수는 사외감사로 구성하고 또한 감사의 선임제안 시에는 감사회의 동의를 요하는 것으

48) 前田重行, "ドイツにおけるコ-ボレイトガバナンスの問題" 『民商法雑誌』 117권 4·5호(1998) 559쪽

49)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supra note 29, Tz. 224. Eberhard Scheffler, Der Aufsichtsrat nützlich oder überflüssig? ZGR 1993, S. 69., 前田重行, 전제논문 558쪽.

50) III. 5. (1) 참조.

로 하며 사외감사의 자격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조치들이 강구되고 있다⁵¹⁾.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비교적 최근인 1995년과 1996년에 감사제도에 관한 중요한 개정이 있었지만 이 두번의 개정으로 도입된 것은 감사제도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개선할 수 있는 사외감사를 포함한 감사회제도가 아니라 감사의 겸직금지(상법 411조), 이사의 보고의무(상법 412조의 2), 감사의 주주총회소집청구권(상법 412조의 3), 자회사조사권(상법 412조의 4), 상근감사제도(증권거래법 191조의 12), 법령 등의 위반사실에 관한 감사 및 외부감사인의 상호통보의무 등(외감법 10조 1항, 2항, 3항)이다. 이것들은 주로 감사의 권한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상근감사제도와 감사 및 외부감사인간의 상호통보의무 정도가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일본에서는 이미 1993년 개정전에 도입되었던 내용이고 그리고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있어서는 그 효과가 미미함이 이미 입증된 내용들이다.

더구나 1997년에 증권거래법개정을 통해 증권상장회사에 도입된 상근감사제도는 1981년의 일본상법개정에서 도입한 이른바 “복수상근감사제도”를 수용한 것인데 그러나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즉 일본의 경우는 감사의 대상이 광범위하고 복잡한 대회사의 경우 복수의 감사를 통해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의 경우 감사를 2인 이상으로 하고 그 중 1인은 반드시 상근감사로 하도록 한 것”인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주권상장법인 중 일정 규모(최근 사업년도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의 법인의 경우 단지 상근감사를 1인 이상 두도록 할 뿐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회사의 경우 1명의 감사를 두더라도 그 자를 상근으로 하면 하등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상근감사제도는 복수의 감사를 통한 감사의 질의 제고라는 복수감사제도와는 근본적으로 거리가 먼 제도이며 단지 비상근감사를 상근감사로 하는 의미 밖에 없다.

요컨대 우리나라 감사제도는 법체계면에서는 일본과 유사하지만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특히 1993년을 기점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러한 차이는 독자적인 입법정책에 따른 것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일본법을 입법모델로 하면서도 감사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의 도입에는 소극적이었던 것에 원인이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V. 결어

1. 영미식의 일원적시스템이나, 독일식의 이원적시스템이나

감사는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할 권한을 갖지만 한편으로는 업무집행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도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업무집행에 대한 감사기

51) 전계 (주 11) 및 (주 56) 자료 참조.

능과 감독기능이 기관조직상 확연히 구별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감사는 법형식상은 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해 업무감사권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기능실태적으로는 이사회에 보조적 기관으로서 기능함으로써 감사기능에 관해 그 실효성이 늘상 문제되고 있다⁵²⁾.

이러한 문제는 영미법에서는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이에 관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에 의해 선임되는 경영진이 담당하고 이사회는 단지 감독기관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통하여, 또한 독일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이사와 이를 감시·감독하는 감사회를 법제도적으로 완전히 이원화함으로써 구조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회와 감사 간의 업무중복으로 인한 무책임화 내지는 감시기능의 저하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경영자감시시스템 자체를 획기적으로 변경하는 것, 즉 영미식의 일원시스템이나 독일의 이원적시스템 중의 어느 한 쪽을 택하는 이른바 “양자 택일”의 문제에 귀착하게 된다. 그리고 국내학자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감사제도를 독일식의 이원적 시스템으로 운영하자는 주장도 이미 개진되고 있다⁵³⁾.

그런데 필자는 이러한 문제는 보다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독일의 이원적 시스템은 감사회가 이사의 선·해임권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독일 시스템으로 가는 방법은 현행의 감사기관을 합의체인 감사회로 하고 거기 예다가 이사의 선·해임권을 포함하여 업무에 관한 타당성감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업실태는 감사직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진급을 위한 혹은 퇴임을 앞 둔 경영자에 대한 예우의 자리나 동기부상의 지위 쫓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감사보다는 이사가 우월하고 이사 사이에 있어서도 서열관계가 있어서 대표이사가 절대적이고 특히 재벌기업에 있어서는 총수나 명예회장이니 하는 이른바 오너가 경영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한 어떠한 형태로든 경영에 직접 간여하려는 풍토속에서 일거에 법개정을 통해 독일시스템을 선택하는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

즉 감사회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대주주가 보다 많은 회사에서 출현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또는 적어도 이러한 징조가 보이지 않고서는 힘의 우위를 이사직보다 감사직에 두는 독일시스템의 채택은 우리나라에서는 시기상조라 생각된다.

독일식의 이원적 시스템은 장점도 있지만⁵⁴⁾ 또한 구조적인 문제점도 없지 않다. 독일의 주식회사 경영관리시스템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은 공동결정제도에 의해 종업원·노동자 대표가 감사회에 참가한다는 것이다. 감사회에 노동자의 대표가 참가할 경우에는 감사회의 구성

52) 이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제체를 갖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坂本延夫, “ドイツの取締役制度” 「取締役の權限と責任」, (加美和照編・中央經濟社, 1994) 395쪽).

53) 鄭燦亨, 전제논문 62쪽.

54) IV. 1. 참조.

원이 이해가 다른 이질적인 계층으로 구성됨으로써 감사회의 의사결정시 이해대립의 조정이거나 이를 위한 협의가 필요하게 되고 아무래도 신속한 의사결정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이것은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생명인 현대 기업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⁵⁵⁾.

그렇다면 영미식은 어떤가. 영미식의 선택은 현행의 이사회를 사외이사 중심으로 바꾸고 그 산하에 감사업무를 전담할 사외이사 중심의 감사위원회라는 조직을 두는 것이다. 이 영미식 방법은 간단히 말하면 현재 회사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존재하는 감사를 이사회 산하의 하나의 조직으로 편입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방식은 전술한 바와 같이 업무집행기관과 감시기관 간에 정보교류가 용이하고, 양기관 간의 밀접한 관계를 통하여 집중적인 감독이 가능하며 경영전략이나 장기계획의 책정단계에서 조언이나 협의의 형태로 사전감독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분명히 장점이 많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도 영미식의 일원적 시스템을 지향하는 제안들이 최근들어 증가하고 있다⁵⁶⁾.

그런데 이 방법을 선택할 경우에는 적어도 감사위원회만이라도 영미에서와 같이 철저히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로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를 충족하지 못한 채 미국식의 일원적시스템의 도입은 오히려 감사기능을 현저하게 저하시킬 수도 있다. 독립된 기관으로 존재하여도 감사의 이사에 대한 독립성이 문제가 되는 마당에 이사회의 산하의 조직으로 흡수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⁵⁷⁾. 따라서 현재의 기업관행이 개선되고 또한 기업을 둘러싼 제반여건이 성숙될 때까지는 현행의 감사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감사제도가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 보면 우리나라 감사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2. 감사회제도

첫째 감사회제도의 도입이다.

감사업무가 복잡·전문화되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소수의 감사만으로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문제이고 더구나 그 자가 비상근이어서는 더 더욱 그렇다. 그리하여 1997년 증권거래법 개정에서도 대규모회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1인 이상의 상근감사

55)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supra note 29, Tz. 255.

56) 예를 들면 “企業統治に關する商法等の改正案骨子”(商事法務 1494호(1998) 54쪽)의 배경설명, 천개 (주 11) 자료, 江頭憲治郎, “自民黨の商法等改正試案骨子と監査役・監査役會” 商事法務 1470호(1997) 22쪽.

57) 江頭憲治郎(에가시라·겐지로우)교수는 미국식의 일원시스템은 현행법 아래서도 운영 여하에 따라서는 실현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업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처리의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상계논문 22쪽).

를 두도록 한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전술한 바이지만 현행법에 의하면 기업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감사를 상근으로 하는 한 1인만 두어도 되기 때문이다.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영미나 독일, 프랑스⁵⁸⁾, 일본 등 선진자본주의 국가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률에 의해 또는 실무관행에 의해 대규모주식회사의 감사기구(監査機構)는 최소한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회의체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상식이다. 감사기관의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독립성이 문제가 되는 우리나라에서는 감사의 힘을 결집하여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발언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감사 상호간에 감사정보의 공유나 역할분담을 통한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라는 측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외부감사인과의 업무연계라는 측면에서도 감사회의 도입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감사회를 통하여 감사와 외부감사인이 수시로 혹은 정기적으로 회합을 하고 나아가서는 영미법에서처럼⁵⁹⁾ 거의 모든 대기업에서 경영조직의 일부로서 운영하고 있는 사내감사조직의 책임자까지도 감사회에 참가를 허용함으로써 사내감사나 외부감사인간의 업무연계는 물론이고 감사전체의 실효성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감사의 독립성확보라는 측면에서도 감사회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현행 상법이 주주총회를 정점으로 감사와 이사(회)를 대등·평등적 관계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이상은 이사회가 그 구성원에 대해 선임제안권을 갖는 한 감사의 경우에도 스스로에 대해 선임제안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상법의 기본이념에 일치하는 당연한 법적 요청이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사회의 영향력으로부터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다만 이 경우에 감사 개인에게 선임제안권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감사회라는 회의체에 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남용의 방지나 중지를 모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후술하지만 사외감사제도의 도입을 생각할 경우에도 감사회는 사외감사가 회사정보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감사회에 감사관련 정보가 집중함으로써 본질적으로 회사 상황에 관한 지식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사외감사로서는 보다 용이하게 회사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감사회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감사회를 합의체로 운영하게 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 예를 들면 다수결로써 감사 개개인의 권한이나 직무범위를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일본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독임제"를 근간으로 하는 협의체방식이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8) 프랑스의 현행회사법인 1966년 7월 24일 법률은 주식회사에 관해 2개의 경영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즉 하나는 1940년 법률 및 1943년 법률을 계수한 것이고, 또 하나는 독일법을 모델로 하여 회사기관의 엄격한 권한분립을 실현한 것인데 이 중 어느 시스템을 선택하는지는 회사의 자유이다. 다만 독일법형 시스템을 취할 경우에는 최소 3명 최대 12명의 감사위원(membres du conseil de surveillance)으로 구성되는 감사회(le conseil de surveillance)를 두어야 한다.

59) III. 2. (1), 3. (1)참조.

3. 감사의 독립성확보

둘째 감사의 독립성확보를 위하여 감사의 선임권을 감사(회)에 부여하는 방법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주주총회소집권한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있다. 議題는 사전에 소집통지에 기재되어야 하므로 주주제안권이 행사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집권자인 이사회가 결정하게 된다. 감사선임의 경우에도 이사회가 후보자를 결정하고 주주총회에 제안하게 된다. 즉 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를 하는 자를 추천하고 그리고 대개의 경우 주주총회에서는 추천된 감사후보자가 감사로 선임된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주장되고 있는 것이 바로 감사의 선임제안권을 감사(회)에게 부여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방법이 취하여지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첫째 감사회가 감사후보자를 지명하더라도 주주총회를 이사회가 장악하고 있는 한 결국 이사회에 의향에 맞는 감사 밖에 선임될 수 없고, 둘째 반대로 감사회가 실질적으로 이사회에 의향과 무관계인 감사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감사회 구성원 전원이 이러한 형태로 선임되어 버리면 감사와 이사간의 커뮤니케이션(협조)이 곤란하게 된다. 충실한 감사를 위해서는 감사는 한편에서는 이사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이사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아니되는데 감사회에게 감사의 선임제안권을 인정할 경우에는 이 후자의 요청이 충족되지 못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⁶⁰⁾.

따라서 감사의 독립성의 확보와 감사와 이사간의 상호협조체제의 구축이라는 상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감사의 독립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 주주총회가 최종 선임권을 갖는 것을 전제로 하는 — 선임제안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직접 감사회에 선임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i) 첫째로 이사와의 긴밀한 협조관계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감사회 구성원 전원에 대해 선임권을 부여할 수는 없다는 점이고 (ii) 둘째로 현행법이 감사를 “주주의 위임”을 받아 이사의 직무를 감사하는 자(상법 409조 1항, 412조 1항)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감사선임권을 주주가 아닌 감사회에게 부여하는 것이 기관권한분배의 원칙 상 허용될 수 있는가이다.

필자는 먼저 (i)과 관련하여 감사 중 적어도 1인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후보추천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가능하면 그 자를 상근감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상근감사는 이른바 “풀 타임”감사로 해석되는 이상 회사에 상근하면서 이사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는데 유리한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ii)와 관련해서는 감사의 선임권을 감사회에 주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주주총회의

60) 森淳二朗, 전제논문 63쪽.

추인을 얻도록 하는 방법이다. 즉 감사회에 의한 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추인을 조건으로 그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기관권한분립의 원칙과 관련한 불필요한 시비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선임권을 부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감사회가 감사를 선임하더라도 사전에 이사회에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방법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 이 방법을 취하게 되면 이사회는 이사회후보자를 선임하면서도 감사후보자로 선임하는 결과가 되어 역학관계에 있어서 이사회가 감사회보다 상위의 지위에 서게 되므로 감사의 독립성 확보의 요청은 훼손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필자와 같이 상근감사에 대해 이사회와의 협조체제의 구축을 위한 창구로서의 역할까지 기대하게 되면 상근감사의 자격은 사내출신자로서 경영진과의 관계가 원만하며 경영내용에 정통한 자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현행 증권거래법상의 상근감사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보면 오히려 상근감사라기 보다는 사외감사에 더 어울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⁶¹⁾.

4. 사외감사

우리나라 감사제도의 특징은 감사를 하는 자가 감사를 받는자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의미에서 “자기감사적 색채”가 농후하다는 점에 있다. 그 이유는 말할 나위도 없이 감사의 대부분이 사내출신자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내출신자에 의한 감사의 한계를 사외자가 보완함으로써 제3자적 입장에서 보다 객관적인 감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외감사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⁶²⁾.

사외감사의 자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그 방법에는 사외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영미식의 고용관계의 유무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의 유무라는 실질적 기준을 선택할 것인가 일본과 같이 단순한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이고 동시에 또한 사외감사에 적합한 자격의 소지자, 사외감사를 두어야 하는 회사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만 얻을 수 있는 결론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외감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독립성과 공정성인 만큼 적어도 인적관계든, 사업관계든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외감사의 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인데 영미의 경우는 최소한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의 전원을 고용관계가 없었던 사외자로 하고 게다가 그 중 과반수는 경영권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비이해 관계자)로 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사외출신자

61) (주 5) 참조.

62) 同前, 洪復基, 전제논문 190쪽.

에 대해 소극적인 일본에 있어서조차 최근에는 감사회는 3인 이상으로 하고 그 중 과반수는 사외자로 하며 감사 중 1인은 반드시 상근이어야 한다는 제언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參考文獻》

- 金敦昌, "현행 商法上の 監査制度와 그 改善方向," 「上場協」 제26호, 韓國上場協議會, 1992.
- 李範燦, "企業의 構造調整과 株式會社機關의 改編方向," 「會社法の 諸問題」(李範燦編著), 三知院, 1998.
- 林重鎬, "獨逸의 株式會社 監査制度," 「會社法の 諸問題」(李範燦編著), 三知院, 1998.
- 鄭燦亨, "株式會社 監事制度의 改善方向," 「上場協」 제27호, 韓國上場協議會, 1993.
- 崔柄星, "商法上 監事와 外部監査人の 責任限界와 效率的 連繫方案," 「上場協」 제26호, 韓國上場協議會, 1992.
- 洪復基, "社外監事に 대하여," 「商事法研究」 제13집, 韓國商事法學會, 1994.
- , "改正證券去來法에 있어서 監事の 資格," 「企業과 法」, 度岩 金敦昌辯護士華甲記念論文集, 1997.
-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Corporation, Banking and Business Law, Committee on Corporate Laws, "Corporate Director's Guidebook," 33 Bus. Law. 1591, 1978.
- , "Corporate Director's Guidebook 1994 edition," 49 Bus. Law. 1247, 1994.
- ALI,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Final Draft), 1992.
- Gower, Principles of Modern Company Law (5th edition), 1992.
- Saleem Sheikh / William Rees, Corporate Governance & Corporate Control, 1995.
-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Bericht über die Verhandlungen der Unternehmensrechtskommission, Tz, 1979.
- D, Feddersen, P. Hommelhoff, U. H. Schneider(Hrsg.), Corporate Governance, Einführung, 1996.
- Eberhard Scheffler, Der Aufsichtsrat nützlich oder überflüssig ?, ZGR, 1993.
- Hans-Joachim Mertens in Kölner Kommentar zum AktG, § 111, Rdn. 11, 2 Aufl., 1996.

Marcus Lutter und Thomas Kremer, Die Beratung der Gesellschaft durch Aufsichtsratsmitglieder, ZGR, 1992.

Marcus Lutter und Gerd Krieger, Recht und Pflichten des Aufsichtsrats, 3Aul., 1993.

Schwegler, Die Stellung des Wirtschaftsprüfers zu den Organen, BB, 1995.

江頭憲治郎, “自民黨の商法等改正試案骨子と監査役・監査役會,” 「商事法務」 1470호, 1997.

坂本延夫, “ドイツの取締役制度,” 「取締役の權限と責任」, 加美和照編・中央經濟社, 1994.

前田重行, “ドイツにおけるコ-ポレイトガバナンスの問題,” 「民商法雜誌」 117권 4・5호, 1998.

片木晴彦, “監査役會と監査役の獨任制,” 「商事法務」 1336호, 1993.

前田庸, “平成五年商法等の改正要綱について[上],” 「商事法務」 1315호, 1993.

田中誠二, “平成五年商法改正法管見,” 「商事法務」 1336호, 1993.

森本滋, “日米構造問題協議と商法改正,” 「民商法雜誌」 108권 4・5호, 1993.

吉戒修一・大谷洸大, “社外監査役制度の趣旨およびその運用,” 「商事法務」 1332호, 1993.

日本コ-ポルト・ガヴァナンス・フォーラム, 코-포르트・가ヴァナンス原則策定委員會, “코-포르트・가ヴァナンス原則 — 新しい日本型企業統治を考える(中間報告) —,” 「商事法務」 1476호, 1997.

森淳二郎, “監査役の構成原理とシステム,” 「企業の健全性確保と取締役の責任」, 有斐閣, 1997.

小柿徳武, “會計監査人の情報提供機能とコ-ポレイト・ガバナンス(-),” 「民商法雜誌」, 1997.

片木晴彦, “會計監査人の職務と責任,” 「廣島法學」 9권 4호, 1985.

SUMMARY

The Study on Auditing System

Kwon, Jong-ho

(Department of Law, College of Law, KonKuk University)

This article considers problems of korean auditing system and its improvement from the comparative legal study. Non-functional matter caused by lack of auditorial independence has been indicated as our auditing system characteristic. Anglo-American one-tier system focusing on external director or German two-tier system in which auditors board designate director have been suggested to introduc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However, this is not the best way to solve it if we consider the realities of korean corporations.

The best way to solve this problem is to keep present system and try to find out its improvement. I think the best way to improve korean auditing system is to introduce auditors meeting system which appoints a majority of member to the external auditor, and to give an appointing power of director to this meeting. Because it is only way to insure the independence of auditor and the effectiveness of audit.